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3020 |
|----------|------|

2025년 9월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강석주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1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석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재난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는 계절성 재난인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2호 등)
- (2) 시장의 책무에 한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
- (3) 종합대책 수립에 한파를 포함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및 6조)
- (4) 재난도우미 운영에 한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한파를 규정함(안 제8조 등)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 요

-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별 재난인 폭염과 더불어 한파 역시 동일한 수준의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폭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대책 수립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한파'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명부터 개별조문까지 전부개정하려는 것임([표] 참조).

### [표] 전부개정 주요 조문내용

| 현행                                                                                               | 전부개정안                                                                          |
|--------------------------------------------------------------------------------------------------|--------------------------------------------------------------------------------|
| <b>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b>                                                                | <b>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b>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제2조(정의) -----                                                                  |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  
-----  
-.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폭염·한파 -----  
-----.
6. “폭염·한파 취약지역”은 폭염·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폭염·한파-----  
----- 생명·건강과 재산-----  
-----  
--.

제4조(시민의 의무) ① -----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된 ----- 폭염·한파 행동요령-----.

② ----- 폭염·한파 -----  
-----.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  
-----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한파 -----  
-----.

② -----  
-----.

1. 폭염·한파 -----
2. 폭염·한파 -----
3. 폭염·한파 -----
4. 무더위·한파 쉼터-----
5. 폭염·한파 -----

6.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 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 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폭염·한파 저감시설 -----

7. 폭염·한파 취약계층-----

8. ----- 폭염·한파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지역-----.

1. ----- 폭염·한파 -----

2. (현행과 같음)

3. ----- 폭염·한파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 폭염·한파 취약계층-----.

② -----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 무더위·한파 쉼터 및 폭염·한파 저감시설 --- 폭염·한파 대응-----.

제9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 폭염·한파 취약계층-----.

1. (현행과 같음)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난방 물품 보급

3. 무더위·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한파 -----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무더위·한파 쉼터) -----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

|                                                                                                                                                                                                                                                                                                                                                                                                                  |                                                                                                                                                                                                                                                                                                                                                                |
|------------------------------------------------------------------------------------------------------------------------------------------------------------------------------------------------------------------------------------------------------------------------------------------------------------------------------------------------------------------------------------------------------------------|----------------------------------------------------------------------------------------------------------------------------------------------------------------------------------------------------------------------------------------------------------------------------------------------------------------------------------------------------------------|
| <p>제11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p> <p>2.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p> <p>3.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p> <p>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 | <p>제11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br/>-----폭염·한파 저감시설 -----<br/>-----<br/>-----.</p> <p>1. ----- 폭염·한파 저감시설<br/>--</p> <p>2. 폭염·한파 대응 ----- 폭염·한파 저감시설 ----</p> <p>3. (현행과 같음)</p> <p>② ----- 폭염·한파 저감시설 -----<br/>-----<br/>-----.</p> <p>제12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br/>폭염·한파 -----<br/>-----.</p> <p>제13조(협력체계 구축) ---- 폭염·한파 -----<br/>-----<br/>-----.</p> |
|------------------------------------------------------------------------------------------------------------------------------------------------------------------------------------------------------------------------------------------------------------------------------------------------------------------------------------------------------------------------------------------------------------------|----------------------------------------------------------------------------------------------------------------------------------------------------------------------------------------------------------------------------------------------------------------------------------------------------------------------------------------------------------------|

## ■ 폭염 및 한파 관련 상위법 현황

- ‘18. 9. 18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20.4.30.)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1)에 따라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대책 및 대비, 각 유관기관

### 1)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지원·협조 체계 구축 등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에 따라 ‘폭염’에 대해서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폭염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폭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폭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등등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제명 및 본문 내용 전반에 걸쳐 “폭염”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폭염·한파”로 용어를 수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정합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개별적으로는 안 제2조 관련하여 현행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던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 별

---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8.9. (생략)

### ③ ~ ⑥ (생략)

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한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음([표] 참조).

[표] 용어의 정의 수정사항(안 제2조 관련)

| 현행                                                                                                                             | 전부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li> <li>“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li> </ul> |

- 참고로,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며,
- ‘한파주의보’ 기준은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임([표] 참조).

[표] 폭염 및 한파 특보의 기준(「기상법 시행령」 별표 1)

| 종류 | 주의보                                                                                                                    | 경보                                                                                                                     |
|----|------------------------------------------------------------------------------------------------------------------------|------------------------------------------------------------------------------------------------------------------------|
| 한파 | <p>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 <p>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p> |

|    |                                                                                                                                      |                                                                                                                                               |
|----|--------------------------------------------------------------------------------------------------------------------------------------|-----------------------------------------------------------------------------------------------------------------------------------------------|
|    |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br>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br>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br>예상될 때                                                         |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br>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br>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br>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폭염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1.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br>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br>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br>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br>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1.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br>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br>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br>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br>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다음으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현행 폭염에만 해당되는 “선풍기 등 냉방물품”, “무더위쉼터, 살  
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시설”, “온열질환” 등과 함께  
방풍시설 등 한파 관련한 것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표] 참조),

[표] ‘한파’ 관련 추가사항(안 제9조 관련)

| 현행<br>(“폭염”)                                                                                                                             | 전부개정안<br>(“폭염·한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li> <li>•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li> <li>•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풍기, <u>온풍기</u> 등 냉·<u>난방</u> 물품 보급</li> <li>• 무더위·<u>한파</u> 쉼터, 살수시설, <u>방풍시설</u> 등 폭염·<u>한파</u>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li> <li>• 온열질환 및 <u>한랭질환</u> 의료비 지급</li> </ul> |

- 안 [별표]에서 현행 대비 한파와 관련한 “방풍시설”과 “온열의자”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한파 저감시설(안 [별표] 관련)**

| 한파 저감시설 | 정 의                                                  |
|---------|------------------------------------------------------|
| 방풍시설    | 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
| 온열의자    |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2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윤종복, 이병도,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효원,  
최민규, 허 훈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재난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는 계절성 재난인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2호 등)
- 나. 시장의 책무에 한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
- 다. 종합대책 수립에 한파를 포함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및 6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한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한파를 규정함(안 제8조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기상법」 시행령 등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

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폭염·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6. “폭염·한파 취약지역”은 폭염·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 6.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무더위·한파 쉼터 및 폭염·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난방 물품 보급
3. 무더위·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한파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한파 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한파 저감시설(제2조제5호 관련)

| 폭염·한파 저감시설                         | 정 의                                                              |
|------------------------------------|------------------------------------------------------------------|
| 지붕 차열도장<br>(쿨루프)                   |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
| 안개형 냉각 또는<br>안개형 냉각수 시스템<br>(쿨링포그) |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
| 차열성<br>도로포장                        |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
| 그늘막 및<br>그늘목                       |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 보도 나무그늘<br>만들기                     |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 수경시설                               |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
| 방풍시설                               | 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
| 온열의자                               |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 그 밖의 시설                            | 위 시설물 외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파에 대한 피해예방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소관부서(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에서 매년 서울시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저감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단, 참고자료로 '24/25년 서울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결과를 첨부함(붙임)

###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과 |
| 재정분석과장    | 이선희   |
| 추계세제팀장    | 김중헌   |
| 추 계 분 석 관 | 이설화   |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24/25년 서울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결과(재난안전예방과-5691호, '25. 4. 14.)

## '24/25년 서울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결과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2133-8515 재난안전예방팀장: 안재동☎8517 담당:김민범/조은나☎8519/8537

한파 대책 기간('24.11.15.~'25.3.15),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우리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I 추진 근거 및 개요

#### □ 추진 근거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市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대책 수립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7. 한파대책 예방 자원 유관기관 협업 등 포함

##### 대책 기간 근거

● 재난안전법 제16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市 조례 제2조 4호 : 한파 대비 매년 11.15~다음해 3.15.

- 방침 : '24/25년 서울시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24.11.15.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0호)

#### □ 추진 개요

- 기간 : 2024. 11. 15. ~ 2025. 3. 15.(4개월간)
- 방법 : 정부 ↔ 서울시 ↔ 자치구·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 (평시) 모바일상황실 운영, (한파특보시)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24시간)
- 내용 : 5대 핵심 추진과제 기반, 市 행정력과 민간자원 활용 연계 확대

- ① 실시간 위기대응 위기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용, 피해 긴급지원 등
- ② 취약계층 보호 대상별 맞춤형 보호활동, 위기가구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 ③ 시민 보호시설 한파쉼터, 한파 응급대피소, 기후동행쉼터(민간협력) 등 운영 확대
- ④ 기반시설 점검 한파 대응 수도, 전력, 가스, 교통(지하철, 버스 등) 분야 중점
- ⑤ 산업현장 보호 건설, 공원, 이동노동자 근로자 보호, 전통시장 및 농업 안전관리

### III 한파 예방 및 대응 주요 성과

#### 첫째, 위기단계별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체계 운영

##### □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별 한파 비상대응체계 가동

- (평시) 모바일상황실 ⇒ (특보발효시) 종합지원상황실(주의보 5개반, 경보 8개반)  
+ 주의보 5개반(홍합·생활지원·에너지·의료·구조) → 경보 8개반(주의보+교통·시설·홍보 추가)

##### □ 만·관 협업 기반, 빈틈없는 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 '24.12~'25.2, 응급의료기관(69개소) - 지방자치단체(시·구) - 정부(질병관리청) 간 일일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운영

#### 둘째, 노숙인, 쪽방 주민,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 거리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상담, 구호물품, 건강관리, 응급잠자리 지원 등
- 어르신 안부 확인·급식 지원,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활용 취약계층 발굴 강화
- 생계비·의료비,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한파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셋째, 한파 대응 대피공간 및 취약계층 시민 보호시설 운영 확대

- 市 - 민간 협력, 기후동행센터(493곳) 운영을 통한 한파 대응 체계 마련  
- 편의점 57개소, 신한은행 197개소, KT대리점 239개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공간
- '한파센터'(1,360곳) 및 '한파 응급대피소'(94곳) 등 자치구 협력을 통한 대피공간 운영  
- 한파특보 발효시 전체 25개 자치구청사 응급대피소로 24시간 개방·운영 개시('25.1월)
- 야외 등 한파 저감시설 5,712개소 운영(온열의자, 방풍텐트 등)

#### 넷째, 한파 대응 상수도, 전력, 가스, 교통 기반시설 안전점검 강화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신속 복구, 단수시 비상급수 체계 구축·운영
- 전력, 열수송관, 가스, 지하철·버스 등 기반시설 사전점검 및 자체 안전관리

#### 다섯째, 한파 대응 야외근로자 및 산업현장 보호 체계 구축

-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市 발주공사장, 서울시 내 민간·공공 공사장 점검
- 서울시 주요 공원,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쉼터 운영 등
- 전통시장 화재 대피 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보호 대책 강구